

의안번호	2205656
의 퇴 인	안호영의원
회 답 일	2024. 12. 16.
추 계 번호	24D5082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의 재정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,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수입은 2025년 7,277억원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총 4조 3,662억원(연평균 7,277억원)이 증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안 제116조의5 신설 (지방교부세 특례)	7,277	7,277	7,277	7,277	7,277	7,277	43,662	7,277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)	-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7호 신설)	재량규정
2	안 제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) 신설	-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도조례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(제1항), 국가 및 전북자치도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제2항)	재량규정
3	안 제26조(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) 신설	-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(제7항),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7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8항)	재량규정
4	안 제29조의2(지방의료원 지원 특례) 신설	-국가는 전북자치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 및 제1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5	안 제30조의2 (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) 신설	-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 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(제1항), 국가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32조의2 (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) 신설	-도지사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(제1항)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 및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·절차·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33조의2 (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) 신설	-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,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(제3항),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8	안 제38조의2 (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) 신설	-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(제1항), 국가는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66조의2 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 신설	-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(제1항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,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·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66조의3 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) 신설	-도지사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(이하 “전북자치도 생활인구”라 한다) 확대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11	안 제67조의2 (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) 신설	-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(제1항),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2	안 제83조의2 (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) 신설	-환경부장관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(제1항),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13	안 제90조의2 (외국인 정착 활성화) 신설	-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·운영할 수 있으며(제2항), 국가는 시범도시 지정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4	안 제90조의3 (대중교통 활성화 촉진) 신설	-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(제1항), 전북자치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5	안 제90조의6 (조세의 감면) 신설	-산악관광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취득세·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6	안 제100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) 신설	-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7	안 제116조의5 (지방교부세 특례) 신설	-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 ¹⁾ 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(제1항) -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8조의3제2항 ²⁾ 에 따라 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1) 「지방교부세법」

제6조(보통교부세의 교부)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. 다만,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,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.

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8조(기준재정수입액)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.

2) 「지방교부세법」 제8조의3(건전재정운동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)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)	×	-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
2	안 제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) 신설	×	-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규모,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가 어렵고,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3	안 제26조(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) 신설	×	-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재정적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
4	안 제29조의2(지방의료원 지원 특례) 신설	×	-전북자치도의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, 의료취약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 및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
5	안 제30조의2(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) 신설	×	-전북자치도의 수소특화단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이에 필요한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을 추정 곤란
6	안 제32조의2(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) 신설	×	-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추진될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의 추계 곤란
7	안 제33조의2(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) 신설	×	-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,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전이므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추정 곤란
8	안 제38조의2(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) 신설	×	-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위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추정 곤란
9	안 제66조의2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 신설	×	-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
10	안 제66조의3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) 신설	×	-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함

11	안 제67조의2(평생 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) 신설	×	-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추정 곤란
12	안 제83조의2(국립 공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) 신설	×	-환경부장관이 향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 인근 주민을 위해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현시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추정 곤란
13	안 제90조의2(외국인 정착 활성화) 신설	×	-향후 도지사가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할 시범도시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므로 시범도시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추정 곤란
14	안 제90조의3(대중 교통 활성화 촉진) 신설	×	-향후 전북자치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하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 곤란
15	안 제90조의6(조세의 감면) 신설	×	-산악관광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·취득세·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
16	안 제100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) 신설	×	-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인건비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가 곤란함
17	안 제116조의5(지방교부세 특례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별 인구, 면적 등 기초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이루어지나, 본 추계에서는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, 기준재정수입액, 조정률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에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었고, 개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116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는 경우,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만큼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감소함
-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적으로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연간 7,277억원임
 - 본 추계에서는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액, 기준재정수입액, 조정률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함
 -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를 보면, 기준재정수요액은 2조 7,195억원, 기준재정수입액은 1조 2,625억원이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은 1조 4,570억원이며 조정률은 75%으로, 1조 935억원이 교부되었음

[표 2]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 분	기준재정 수요액	기준재정 수입액	재정부족액	조정률	교부액
보통교부세	27,195	12,625	14,570	75%	10,935

주.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행정안전부

-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(재정부족액)에 125%를 곱하면 개정안에 따른 보통교부세이며, 그 금액에서 현행 보통교부세(=재정부족액×조정률)을 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수입 증가분을 산출하면 연간 7,277억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증가분

(단위: 억원)

자치단체명	기준재정 수요액(A)	기준재정 수입액(B)	재정부족액 (C=A-B)	재정수입 증가 (=C×125% - C×조정율)
전라북도 특별자치도	27,195	12,625	14,570	7,277

주.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(일부 추계) 추계 결과, 개정안의 재정 특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가적으로 교부할 보통교부세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4조 3,662 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재정 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보통교부세	7,277	7,277	7,277	7,277	7,277	7,277	43,66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